

#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박갑상 의원 대표발의)

|          |  |
|----------|--|
| 의안<br>번호 |  |
|----------|--|

발의년월일 : 2022. 5.

발의의원 : 박갑상, 김규학, 김대현,  
김재우, 김태원, 송영현,  
황순자 의원(7명)

## 1. 제안이유

- 폭력 등의 위해로부터 택시운수종사자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택시운수종사자의 보호격벽 설치와 이에 따른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사무의 위탁 시 위탁자 지정은 공개경쟁에 따른 선정을 원칙으로 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폭력 등의 위해로부터 택시운수종사자의 보호 격벽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근거를 규정함(안 제3조제13호)
- 나. 위탁자 지정은 공개경쟁에 따른 선정을 원칙으로 함(안 제5조제2항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」 제7조
- 나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- 다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있음
- 라. 기 타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##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3호 중 “예방”을 “예방, 폭력 등 위험으로부터 택시운수종사자의 보호 등”으로 한다.

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위탁자 지정은 공개경쟁에 따른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| 현<br>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<br>정<br>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3조(재정지원) 대구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. | 제3조(재정지원) 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 |
| 1. ~ 12.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. ~ 12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3. 보건 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장비 및 용품 구입 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3. -----<br><u>예방, 폭력 등 위험으로부터 택시운수종사자의 보호 등</u> -----                      |
| 14.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4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5조(사무의 위탁)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5조(사무의 위탁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u>&lt;신설&gt;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>② 위탁자 지정은 공개경쟁에 따른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.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 관 계 법 령

## [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]

제7조(재정 지원) ①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(제4호의2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.

1. 합병, 분할, 분할합병, 양도·양수 등을 통한 구조조정 또는 경영개선 사업
2. 제9조에 따른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초과한 차량의 감차(減車) 사업
3.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(이하 “택시”라 한다)의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(이하 “친환경 택시”라 한다)로의 대체 사업
4.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·장비의 확충·개선·운영 사업
- 4의2. 서비스 교육 등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 사업
5.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

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·도에 지원할 수 있다.

1. 시·도가 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(이하 “택시운송사업자등”이라 한다)에 보조한 자금. 다만, 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·장비의 운영 사업에 보조한 자금은 제외한다.
2. 택시공영차고지 설치에 필요한 자금